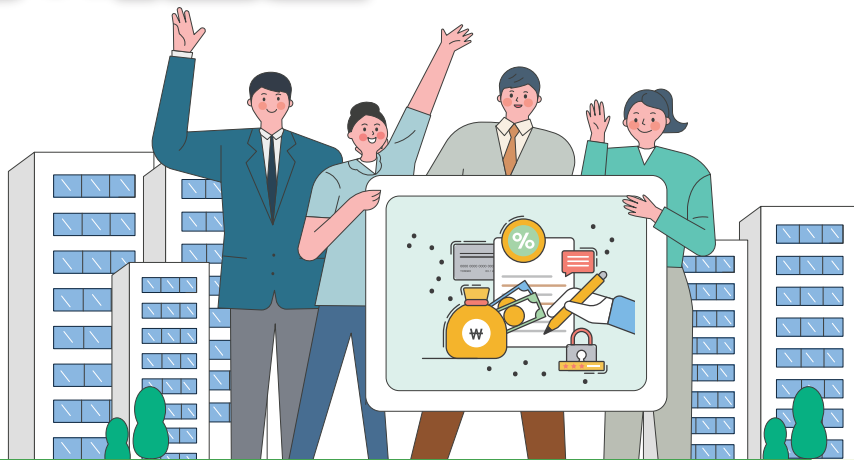


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사업 안내



지역고용촉진지원금, 고용위기지역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나요?

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“고용위기(선제대응)지역”으로 지정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

▶ '26.2.5부터 “고용위기지역” 외 “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”까지 확대·적용

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현황

- ✔ 여수·광주 광산구('25.8.28.~'26.8.27.)
- ✔ 서산·포항('25.11.21.~'26.11.20.)
- ✔ 울산남구('26.1.12.~'26.7.11.)
- ✔ 광양('26.2.13.~'27.2.12.)
- ✔ 인천동구('26.4.16.~'26.6.30.) /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 없음

요건 및 지원액

- 1 고용위기(선제 대응)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,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
- 2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
- 3 월 통상임금의 1/2(대규모기업은 1/3)을 1년간 지원

- 이전·신설·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·장비의 구입,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,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
- 지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정함('26년의 경우 1일 상한액은 6.81만원)

지원 절차

- 1 고용위기(선제대응) 지역 지정 고시 (고용부)
- 2 고시한 지역으로 사업 이전·신설·증설에 따른 지역고용계획 신고 (사업주→고용센터)
- 3 지역고용계획 제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·신설·증설을 완료하고 조업개시 (사업주)
- 4 조업시작신고서를 조업시작 후 1월 이내 고용센터 제출 (사업주→고용센터)
- 5 해당지역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지원금 신청 (사업주→고용센터, 분기별)
- 6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금 지급 (고용센터→사업주)

※'26.7.1. 이후 지역고용계획신고 시 조업시작 기한 6개월 이내로 단축 예정(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범위 내 추가 연장 가능)

신청 고용24(www.work24.go.kr)*에서 신청 가능
*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 > 기업지원금 > 신규채용 > 지역고용촉진

문의 • 국번없이 1350
•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

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별지 제44호서식) <개정 2023. 6. 30.>

지역고용 계획 계획변경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: 1일
사업장	①사업장관리번호	
	②명 칭	③대규모기업 [] 해당 [] 비해당
	④소재지	(전화번호: 휴대전화번호: 담당자:)
	⑤업종명	(주생산업종:)
	⑥업종코드	⑦피보험자수 명
사업장 이전· 신설· 증설 계획	⑧이전 계획	이전 예정일 변경 전 소재지 변경 후 소재지
		년 월 일
	⑨신설 계획	사업장명 소재지 업종명 업종코드
		시설·장비 설치현황 예상소요비용: 만원
	⑩증설 계획	시설·장비 증설현황 예상소요비용: 만원
지역근로자 고용계획	⑪조업시작 예정일 년 월 일 ⑫고용예정 인원 명	
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사업주)
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공지사항

-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(휴대전화)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지역고용계획은 지정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가 그 고용된 날 이전 3년 동안에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작성방법

- ①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⑤업종명 및 ⑥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(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른 고시)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(세세분류)에 의합니다.